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알림설비를 착공신고 대상·하자보수 대상·공사감리자 지정대상·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추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23.12.1.)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하자보수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나목,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의3호, 별표 2)

나.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

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 인용조문 변경(안 별표 5)

라. 기타 조문 자구 수정(안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엑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상경보설비”를 “비상경보설비, 화재알림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방호·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동력제어반

라. 감시제어반

제6조제1호 중 “유도등, 유도표지”를 “유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등”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12조의8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로 한다.

제12조의9제1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승인한”을 “승인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6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단, 제8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개설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8호 중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을 “소방용품을 보수하거나, 소방용품을 단독으로 교체하는”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별표 5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 ----- ----- ----. ----- ----- ----- ----- ----- ----- -----.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 ----- -----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u>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u>	가. ----- ----- ----- - <u>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u> ----- ----- ----- -----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2.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스프링클러설비등 -----

----- 방호 · 방수
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

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
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
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
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
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
(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
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동력(감시)제어반

<신설>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

3.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동력제어반

라. 감시제어반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

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
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
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
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
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
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 5의2. (생략)

<신설>

-----.

1. ----- 유도등-----

2. -----
-- 스프링클러설비등-----

----- 화재알림설비, 소화
용수설비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
는 개설할 때

것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실거나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

----- 승인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청-----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 205 - 7507